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테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http://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mailto: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0 - 231호

시행일자 2020. 5. 21.

수 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하천계획과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수정 요청

1. 국가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청에서 「가금제 제방복구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하면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II. 세부평가방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가” 항목에 다음 공고 내용과 같이 유사용역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용역사업 중 평가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용역의 성격이 전혀 다른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수행한 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확인하시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실적만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용역사업 중 수문, 통문, 제방(호안 포함), 다기능 보에 한하여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평가한다.

### 3. 수정 요청사항

토목분야의 시공, 설계 및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과 관련이 없는 조항 삭제.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